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승마장 월 회원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(숲속의 집)를 할인하여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를 성수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6조)
- 자연휴양림 숙박객 중 구미시승마장 월 회원에게 비수기 60%,
성수기 30%의 할인율을 적용함.(안 별표 1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 의결.(2013.8.19)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,

- 자연휴양림 및 구미시 승마장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사용자)에 대하여,
연중 주차료(2대/1동당)를 면제하여 사용편의를 도모하고,
 - 구미시 승마장 시설 월 회원에게는,
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성수기 30%, 비수기 60% 할인율을 적용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